

■ 인지세 안내

- ▶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(분양 및 전매포함) 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(※ 인지세는 재산권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첨부하게 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이며, 수입인지는 수수료나 세금을 냈다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.)
- ▶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**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□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 1조, 제 3조 제1항 제호 및 제8조

- ▶ 과세대상 :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▶ 납부기한 및 방법 :
 - [분양계약]계약체결일/(전매)명의변경 승인일
 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□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▶ 수입인지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□ 가산세 (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4 제 9항)

- ▶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▶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▶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 ※ 본세는 별도로며 순수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.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1 **해당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 (www.e-revenuestamp.or.kr)**

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▶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▶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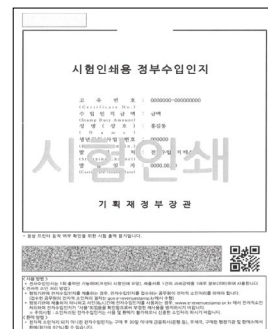
▶ 구매 - 납부정보이력

- 1. 용도 : 인지세 납부 2. 과세문서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3. 금액 : 150,000원 4. 건수 : 1건 5. 확인 및 결제



▶ 구매 - 납부정보이력

- 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

※ 소인 : '소인'은 해당 수입인지가 사용 완료되었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. '소인'된 전자수입인지는 '재사용' 또는 '환매'가 불가능하오니 착오로 '소인'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